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1
----------	------

발의연월일 : 2025. 3.

발의의원 : 곽동환 의원,

신달호 의원, 신동윤 의원

## 1. 제안이유

정신질환자 및 관련 범죄의 증가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나.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 다.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急性期)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3.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적합하다고 해당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경찰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소방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정신의료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 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되,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해당 기관·단체장 추천 당시의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정신의료기관)** 군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급입원이 가능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현황 조사 및 관리
2.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제7조(지원)**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치료비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른 치료비
3. 법 제11조에 따른 발병초기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에 따라 지정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로 본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2024.10.22. 타법개정·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3.11. 타법개정·시행)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과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2024.9.20. 타법개정·시행)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에 다른 치료비 등에서 비용 발생이 예상됨(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7조에 따른 재정요인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 수준(1억원 미만)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안 제7조)

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43,400,000원	
(국비 21,700천원(50%), 시비 10,850천원(25%), 군비 10,850천원(25%))	

작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곽 동 환 (☎ 2057)
-----------	----------	-------------	----------------